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59
----------	-------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이언주 · 허성무 · 안도걸
정진욱 · 소병훈 · 이상식
이개호 · 문대림 · 최혁진
이광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필수이며 학비 부담이 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취득하여야”를 “취득하거나 제5조의2에 따른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여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변호사예비시험) ① 변호사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예비시험을 실시하고,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예비시험의 도입 취지, 전년도 시험 합격자 수,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 및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예비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예비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⑤ 예비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이 경우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예비시험의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응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험”은 “예비시험”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예비시험의 합격자 결정, 실시계획 및 공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예비시험의 응시자격) ①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4조 또는 제5조의2제2항”으로, “시험에”를 “시험 또는 예비시험에”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취득한”을 “취득하거나 예비시험에 합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 제목 및 본문 중 “합격자”를 각각 “시험 합격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험을”을 “시험 및 예비시험을”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시험문제”를 “시험 및 예비시험 문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채점기준에”를 “시험 및 예비시험 채점기준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험합격자”를 “시험 및 예비시험 합격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을 “시험 및 예비시험의 방법 및 시행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시험”을 “시험 및 예비시험”으로 한다.

4의2.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예비시험 선발예정인원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u>취득하여야</u>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u><신설></u></p>	<p>제5조(응시자격) ① ----- ----- ----- -----<u>취득하거나 제5조의2에 따른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여야</u>-----.</p> <p>-----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u>제5조의2(변호사예비시험) ① 변호사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u></p> <p><u>②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예비시험을 실시하고,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u></p> <p><u>③ 법무부장관은 예비시험의 도입 취지, 전년도 시험 합격자수,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 및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u></p>

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비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예비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⑤ 예비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이 경우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예비시험의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응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험”은 “예비시험”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예비시험의 합격자 결정, 실시계획 및 공고절차 등

<신 설>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예비시험의 응시자격)

①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사내대학 형태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예비시험에 응시하려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1. ~ 8. (생략)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는 사람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 또는 제5조의2제2항-----

-----시험 또는 예비시험
에-----.

- 1. ~ 8. (현행과 같음)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

-----취득하거나 예비시험에
합격한-----.

-----.

<p>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u>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u>2. <u>채점기준에 관한 사항</u>3. <u>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u>4. <u>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u> <u><신 설></u>5. 그 밖에 <u>시험에 관하여</u>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u>시험 및 예비시험 문제</u>----- -----2. <u>시험 및 예비시험 채점기준에</u>-----3. <u>시험 및 예비시험 합격자</u>-----4. <u>시험 및 예비시험의 방법 및 시행방법</u>----- <u>4의2.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예비시험 선발예정인원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u>5. -----<u>시험 및 예비시험</u>-----
---	---